

광주지방법원 2024. 9. 11 선고 2024나7207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4. 9. 11 선고 2024나72079 판결

광주지방법원장성군법원 2024. 1. 17 선고 2022가소577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전라남도 장성군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찬

변론종결 2024. 8. 14.

판결선고 2024. 9. 11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2024. 1. 17. 선고 2022가소5772 판결

주문

-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, 615,700원, 2023. 9. 9.부터 2024. 4. 22.까지 월 3,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3. 9. 9.부터 2023. 12. 27.까지 월 5,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임야(이하 각각 '제1임야', '제2임야'라 하고, 두 임야를 합하여 '이 사건 각 임야'라 한다)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84. 2. 27. 접수 제2642호로 1974. 10. 1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.

나. 이후 원고는 제1임야에 관하여 자신의 아들인 B에게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4. 4. 24. 접수 제5080호로 2024. 4. 23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, 제2임야에 관하여 C 외 5인에게 같은 등기소 2023. 12. 28. 접수 제13700호로 2023. 12. 28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.

다. 제1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21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ㄱ" 부분 159㎡는 도로로 포장되어 있고, 제2임야 중 별지3 도면 표시 1 내지 12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ㄱ" 부분 84㎡ 및 같은 도면 표시 13 내지 58, 13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"ㄴ" 부분 150㎡도 도로로 포장되어 있다(이하 위 각 도로를 '이 사건 도로'라고 한다)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장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

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여 위 임야를 점유,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,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,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 및 인근 토지를 오랜 기간 소유하였던 자로 원고 스스로의 토지 이용 편익, 진출입로 이용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제공한 것이므로,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독점적 · 배타적 사용 ·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, 이 사건 도로는 원고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설치되었는데 원고가 사후적으로 이를 처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갑작스럽게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.

3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 ·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, 피고는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를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유지보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,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 · 사용하여 온 사실은 다툼이 없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 · 사용으로 인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가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4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관련 법리

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,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,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,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,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,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,

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,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,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,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·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,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·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,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원소유자의 독점적·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, 매매,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·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(대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).

나. 구체적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, 을 제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영상, 을 제4,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,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 중 일부를 이 사건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·배타적 사용·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.

1) 위성사진(을 제1호증)의 영상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임야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66년 무렵부터 이 사건 도로의 자취를 따라 길이 나 있던 것으로 보이고, 1976년 무렵에는 위 길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객관적, 물리적 형상에 큰 변화 없이 이 사건 각 임야 및 인근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.

2) 원고는 1984. 2. 27. 부친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, 이 사건 각 임야 주변 E 일대의 토지들에 관하여도 원고의 부친 D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1984.경 그 소유권을 취득한 뒤 위 토지들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 소유하였거나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.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위

임야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음은 외관상 명백하므로,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 취득 당시 이 사건 도로로 인하여 그 사용·수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각 임야 및 원고가 소유하였던 인근 토지의 진입로로서의 기능을 하는바, 원고 또한 위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위 토지들의 효용가치와 통행의 편리성이 증대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편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.

3) 원고나 원고 이전에 이 사건 각 임야를 소유하였던 자들은 원고가 2022. 11. 15.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50여 년 동안 이 사건 도로의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.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들을 장기간 소유하고 있다가 위 인접토지들의 대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,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미주, 판사 김연경, 판사 남수진

별지